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266
----------	-------

발의연월일 : 2023. 7. 14.

발의자 : 권칠승 · 김승남 · 정춘숙

김철민 · 임호선 · 민병덕

김승원 · 강준현 · 도종환

강병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20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⑨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③ · ④ (생략) 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u>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⑥ · ⑦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구성하되,</u> <u>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u>위촉한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 <u>⑧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 <u>⑨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u></p>